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6호 2001. 4. 23)

총 무 위 원 회
2001. 5. 4(금)

1. 심사경과

- 가. 2001. 4. 23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4. 23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5. 3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2000. 11. 20)이 발령됨에 따라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던 제3조제6호의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3조제6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인 보호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결정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고 심의기능도 별도 설치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